

# 한미교육재단 정관

(Articles of Incorporation of Korean American Education Foundation, INC)

첫째: 이 법인의 명칭은 한미교육재단(Korean American Education Foundation, INC)이라 한다.

둘째: 이 법인은 비영리공익단체로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며 어떤 개인의 사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. 이 기관은 비영리공익단체설립법에 근거하여 1) 미국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흥시키고 2) 미국 내의 다양한 복합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은 물론 3) 미주 한인의 현지 적응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

셋째: 이 법인은 2조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원을 두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.

1. L.A.한국교육원
2.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

넷째: (a) 법인은 어떤 선전활동이나 법률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가담할 수 없으며, 공직 후보자를 대신한 성명 출판 또는 배포를 포함하여 어떠한 정치적 캠페인에도 참여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.

(b) 이 법인의 모든 자산은 Revenue and Taxation 법 제 214조의 규정에 의거 제공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상기 둘째 조항에 열거한 설립목적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. 법인의 자산이나 순수입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.

(c) 법인이 해산하자마자 법인의 모든 부채와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상환금과 지불 준비금을 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Revenue and Taxation 법 제 214조의 규정에 의거 제공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고 내국세법 제501조 (c)(3)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조건으로 설립된 교육과 자선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비영리 기금(fund), 재단(foundation), 법인(corporation)에만 양도 될 수 있다.

날짜: 2007년 11월 05일